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제출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 주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5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나.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 1) 실용신안권자 성명·주소,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이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에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중 실용신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실용신안권이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10. ~ 11)
3) 행정규제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류기호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명세서 및 도면”으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을 “명세서 및 도면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
정된 내용

제7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p> <p>1. ~ 6의2. (생략)</p> <p><u><신설></u></p> <p>7. ~ 13. (생략)</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생략)</p> <p>② 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u>항</u></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실용신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u>성명 및 주소</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실용신안권자가 법인인</p>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6의3. 「<u>발명진흥법</u>」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p> <p>7. ~ 13.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p> <p><u><삭제></u></p>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 · 분류기호 및 출원
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
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5의2. ~ 7. (생략)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
된 명세서 · 도면 및 요약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
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 도
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

9. · 10. (생략)

<신설>

11. · 12. (생략)

③ ~ ⑤ (생략)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략)

<신설>

2. 분류기호

<삭제>

<삭제>

<삭제>

5의2. ~ 7. (현행과 같음)

8. -----
---- 명세서 및 도면 ----

----- 명
세서 및 도면을 -----

9. · 10. (현행과 같음)

10의2.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
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에 따라 정정된 내용

11.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481-8243